

구성원 소개

유성근 변호사는 판사로 14년을 일하고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끝으로 2014년부터 바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소송을 주된 업무로 다룹니다.

유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등이 3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혐의로 기소돼 징역7년을 구형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대리해 전부무죄를 선고받았고, 회사매각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가치의 과대평가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판매회사를 대리해 350억원의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전부인용 받았습니다. 또 모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적인 금전거래 등 총 4가지의 징계사유로 면직처분을 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1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취소하게 했습니다.

유성근 변호사는 성남교육지원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TEL.

02-3479-2660

MAIL.

seongkeun.ryu@barunlaw.com

학력

| | |
|------|--|
| 1988 | 전주한일고등학교 졸업 |
| 1996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 1998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 2001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 2012 |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 연수(visiting scholar) |

경력

| | |
|---------|----------------------|
| 2001 | 전주지방법원 예비판사 |
| 2003 | 전주지방법원 판사 |
| 2004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
| 2005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
| 2008 | 춘천지방법원 판사 |
| 2010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 201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 2020~현재 |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
| 2020~현재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
| 2014~현재 | 법무법인(유한)바른 구성원 변호사 |

최근업무사례

[민사]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가치의 과대평가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350여억 원의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형사] 지역주택조합장 등이 38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안(징역 7년 구형)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주요업무분야

기업형사
건축행정
건설·부동산
금융소송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쌍용자동차해고무효확인 등

형사

-냉동 닭 군납비리 사건

-춘천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 입찰관련 비리 사건

-산림조합장의 산림조합법위반(선거관련) 사건